

대전지방법원 2017. 1. 13 선고 2016나3063(본소), 2016나3070(반소) 판결

[건물철거등 ·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피항소인

A

피고(반소원고), 항소인

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변론 종결 2016. 12. 9.

판결 선고 2017. 1. 13.

제 1 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. 3. 16. 선고 2013가단52773(본소), 2015가단 3936(반소)

판결

주 문

1. 피고(반소원고)들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(반소원고)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[청구취지]

1. 본소

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 한다)에게,

가. 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 한다) B은 3/13 지분, 피고 C, D, E, F, G는 각 2/13 지분 범위 내에서, 대전 유성구 H 대 826㎡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5, 24, 23, 14,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다'부분 건물 17㎡ 및 같은 감정도표시 13, 22, 21, 12, 9,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라'부분 건물 29㎡를 철거하고, 같은 감정도 표시 16, 17, 18, 19, 20, 11, 9, 10,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나'부분 대지 117㎡를 인도하고, 1)

나. 피고 B은 1,191,560원, 피고 C, D, E, F, G는 각 794,373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2016.

1. 11.자 본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,

다. 피고들은 공동하여 14,769,57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16. 1. 11.자 본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4. 1.

1.부터 위 가.항의 '나'부분 대지 117㎡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68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반소

원고는 피고들에게 대전 유성구 I 대 417㎡ 중 별지2 도면 표시 ○, 고, E, 키, 츠, ㄴ, ○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나'부분 41㎡를 인도하라(제1심 법원이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였으나,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, 반소에 관한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).

[항소취지]

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기각한다.

이 유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"M(3/13지분)"을

"B(3/13 지분, 등기부상 성명 M)"으로, 제4면 제10, 11행, 제7면 제1, 11행의 "이 법원"을 "제1심 법원"으로, 제4면 제17행의 "M"을 "B"으로, 제6면 제2행의 "20년이경과한 1977. 4. 14."를 "20년이 경과한 1997. 4. 14."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본소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그렇다면,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,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양희, 판사 최리지, 판사 김종찬

1) 원고는 철거 및 인도청구에 대하여 공유지분 범위에서 구하는 취지를 누락하였으나, 이는 철거의무가 불가분채무라는 이유로 건물 전체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므로, 위와 같이 선택한다.